기술실시 계약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주)OOO(이하 '실시기업')는 다음과 같이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기재된 '연구원'의 '계약특허'에 대하여 '실시기업'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함에 있어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아래의 용어들은 본문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계약특허'는 다음과 같다. 단, 등록된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실시기업'은 본 계약상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구분	발명의 명칭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번호
특허				
특허				

(2) '계약제품'이란 '계약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사용되어 생산 또는 제조된 일체의 물건을 의미한다.

(3) '실시'라 함은 특허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바를 의미한다.

(4) '개량기술'이라 함은 '실시기업'의 임직원 등이 '계약특허'를 개량, 확장, 대체, 추가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술실시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본 '계약특허'의 '실시'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권의 종류) 전용실시권

(2) (실시지역) 대한민국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당사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해지 등의 사유로 기간만료 이전에 종료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특허권 소멸시까지로 한다.

제5조(기술료)

(1) '실시기업'은 본 계약에 따라 '연구원'으로부터 '계약특허'에 대한 실시권한을 허락받은 대가로 선급기술료로 특허 1건당 금 이백만원(₩2,000,000, 부가세 별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기술료	부가세	지급기한
₩2,000,000X특허건수	₩200,000X특허건수	계약 체결시

(2) 본 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이 '연구원'에 지급한 기술료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특허권 및 유지비용 등)

(1) '실시기업'은 '계약특허'에 대한 실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제3자에게 '계약특허'의 실시를 허여할 할 수 없다.

(2) 본 계약 체결 이후 '계약특허'의 권리유지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비용(특허료, 추납료, 회복료 등)은 '실시기업'이 납부하여야 한다.

(3) '실시기업'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실시기업'의 비용으로 '계약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며, '연구원'과 '실시기업'은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실시권 설정등록 절차에 관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등)

(1) '연구원'과 '실시기업'은 '계약특허'를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얻게 된 상대방의 기술적 · 경영적 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비밀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고 유지한다. 이 의무는 당사자의 소속 임직원 및 그 승계인에게도 적용된다. 단, 법원, 정부기관 등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실시기업'은 임직원 등을 관리 · 감독함에 있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본조의 규정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부터 3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8조 (명칭 사용의 금지)

'실시기업'은 '계약제품' 및 관련 선전·광고 등에 '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계약특허 관련 기술 분야의 제3자 실시)

'연구원'은 '계약특허'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허여한 기술 분야에 대하여 제3자와 자유롭게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실시기업'은 계약체결 여부, 계약 상대방,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연구개발활동의 자유)

본 계약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계약특허'과 동일·유사한 분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에 따른 결과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실시기업’은 ‘계약특허’의 유효성, 효력 등을 다투는 등 ‘연구원’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면책과 침해대응)

(1) ’연구원’은 ’계약특허’의 유효성이나 ‘계약특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및 ‘계약특허’의 사업화 성공 여부에 대해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2) ‘실시기업’은 ‘계약특허’과 관련된 특허나 그 밖의 ‘연구원’의 권리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제3자의 모든 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연구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1) 일방 당사자의 청산, 파산, 회생, 합병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30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서면통지로써 계약위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30일의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실시기업’은 ’계약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계약특허’의 실시 등 일체의 실시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기업’은 ’계약특허’를 포함하여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얻게 된 일체의 정보(형태를 불문한다)를 즉시 반환하거나, ‘연구원’의 선택에 따라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자료의 반환이나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시기업’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제14조(일반 사항)

(1)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지침, 고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은 해석되어야 한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5) 본 계약 또는 '계약특허'의 일부가 무효 또는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갖고 존속한다.

(6) '실시기업'은 본 계약 체결후 법인의 주소, 대표자, 기술이전 담당 임직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연구원'의 착오는 '실시기업'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7) 본 계약은 쌍방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수정될 수 없다.

(8) 본 계약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구체화한 것이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협의 또는 약정을 대체한다.

이상의 합의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기로 한다.

첨부 :1. '실시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실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실시기업'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0년 월 일

‘연구원‘	‘실시기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000
원장 김 종 남 (인)	대표이사 (인)